

2025년 법인세 신고 대비

세액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 국세청 법인세과

CONTENTS

- I | 고용 지원
- II | 투자 촉진 지원
- III | 중소기업 지원
- IV | 연구·인력개발 지원
- V | 기타 지원

I

고용 지원

- 01)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- 02)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- 03)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- 04) 통합고용세액공제

01)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 (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)

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(중소·중견기업 3년)간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·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*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

*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, 주점업(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)

- (공제액)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× 다음의 금액

구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	대기업	
	수도권	지방	수도권	지방	수도권	지방
청년 등* 상시근로자	1,100만원	1,200만원	800만원		400만원	
그 외 상시근로자	700만원	770만원	450만원		-	

* 청년(15세 ~ 29세), 노령자(60세 이상), 장애인, 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자

사후관리

-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(1차 연도)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

➡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,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×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

02)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
제도개요 (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)

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*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
- (공제액)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* × 다음의 공제율

*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급여액 × 약 10% (사회보험료율 :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)

구분	청년 등*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근로자	그 외 상시근로자	
		신성장서비스업**	기타
공제율	100%	75%	50%

* 청년(15세 ~ 29세), 경력단절 여성

** 컴퓨터 프로그래밍,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, 엔지니어링사업, 서적·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, 물류산업 등

사후관리

-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('22.1.1.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)

➡ 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, ②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× 1인당 해당 공제액을 추가납부

03)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(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)

-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
 -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*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**의 평균보다 클 것
 - * (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-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) ÷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, **중소기업의 경우 (22년 3%, 23년 · 24년 3.2%)
 -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
- (공제액) ① + ②
 - ①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× 20%(중견 10%)
 -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× 20%(중견 10%)

사후관리

- 추가공제 (②)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
 - ▶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의 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

04) 통합고용세액공제

제도개요 (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)

- 고용과 관련된 분산된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**통합고용세액공제** 신설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*을 제외한 **법인 사업자**

*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숙박업 제외), 주점업(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)

- (공제액) 전년대비 **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** × 다음의 금액

구분	중소기업(3년)		중견기업(3년)		대기업(2년)	
	수도권	수도권 밖	수도권	수도권 밖	수도권	수도권 밖
청년 등* 상시근로자	1,450만원	1,550만원	800만원		400만원	
그 외 상시근로자	850만원	950만원	450만원		-	
정규직전환·육아휴직 복귀**	1,300만원		900만원		-	

* 청년(15세 ~ 34세), 노령자(60세 이상),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, 상이자 등 / ** 정규직전환·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1년 공제

사후관리

- 2년 이내 **상시근로자수 감소**, 정규직 전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와 **2년 이내근로관계**를 종료한 경우

➡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

II

투자촉진지원

01) 통합투자세액공제

02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

01) 통합투자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'21년부터 시행
- '21.12.31.까지 투자완료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통합세액 공제 중 선택적용 가능

종전 (자산별 구분)

-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
- ②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-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
-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
- ⑤ 초연결(5G) 네트워크 시설



개정 (통합)

통합투자세액공제

- ① 공제대상 : 사업용 유형자산, 무형자산
- ② 공제제외 :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기구, 비품
선박 및 항공기
연와조, 블록조, 철근콘크리트조
기타 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등

01) 통합투자세액공제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소비성서비스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**법인**(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) **사업자**
- (공제액) **기본공제** : {당해연도 투자액 × **규모별 · 항목별 공제율**}
- 추가공제** : {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3년 평균 투자액) × **10%**} [기본공제 2배 한도]

구분	기본공제			추가공제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일반	1	5(7)	10(12)	3(10)
신성장·원천기술	3	6(8)	12(14)	3(10)
국가전략기술사업화	15	15	25	4(10)

* () : 임시투자세액공제율('25.1.1.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, '23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상이)

- (공제시기)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경우 :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

사후관리

- 투자완료일로부터 **2년 내**(특정 시설 · 업종 유 · 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**5년**)에 해당 자산을 **처분 · 임대**한 경우
- 투자완료일로부터 **5년 내**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**전용**한 경우
- ▶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**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**하여 납부

02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

제도개요

-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공제 배제

감면배제대상

<사업개시 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·대체투자의 공제 여부>

구 분	1990.1.1. 이후 사업개시		1989.12.31. 이전 사업개시	
	증설투자 ¹⁾	대체투자 ²⁾	증설투자	대체투자
일반기업	X (정보통신장비 O)	X	X (산업단지·공업지역·정보통신장비 O)	O
중소기업	X (산업단지·공업지역·정보통신장비 O)	O	X (산업단지·공업지역·정보통신장비 O)	O

1) 증설투자 : 공장(사업장)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(사업장)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
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되는 투자

2) 대체투자 :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

- 정보통신장비, 디지털방송장비,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허용
-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

Ⅲ

중소기업 지원

- 01) 중소기업의 범위
- 02)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·감면제도
- 03)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
- 04)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
- 05)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

01) 중소기업의 범위

제도개요

조세특례
지원법상
중소기업에
해당할 경우,

다양한
조세지원 제도
적용 가능

중소기업의 요건

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- ① **업종기준** :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
- ② **규모기준** :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【별표1】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
- ③ **독립성기준** :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고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
- ④ **졸업기준** : 위 ①, ②,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
유예제도

규모의 확대(매출초과)
or
중소기업기본법 개정



중소기업 미 해당 시



해당연도와
그 다음 3개연도까지
중소기업으로 간주

01) 중소기업의 범위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【별표1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

1,500억 원 이하

- 의복, 가죽, 가방 제조
- 펄프, 종이 제조
- 1차 금속 제조
- 전기 장비 제조
- 가구 제조

1,000억 원 이하

-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
- 식료, 담배, 섬유 제조
- 화학, 고무, 금속 제조
- 전기, 전자, 기계 제조
- 수도, 건설, 도소매업

800억 원 이하

- 음료 제조업
- 의료물질, 의약품 제조
- 비금속, 광학기기 제조
- 운수, 창고, 정보통신

600억 원 이하

- 보건, 사회복지 서비스
- 예술, 스포츠 등 서비스
- 산업용 기계, 장비 수리

400억 원 이하

- 숙박 및 음식점업
- 임대업, 부동산업
- 금융 및 보험업

02)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·감면 제도

공제·감면제도 요약

규 정	조특법	특례내용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	§ 6	소재지 · 업종 · 사업자별 50~100% 감면율 차등
위기지역창업 감면	§ 99의9	최초 5년 100%감면 적용 후 그다음 2년 50% 감면
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	§ 7	규모 · 소재지 · 업종별 5~30% 감면율 차등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§ 7의4	결제일별 0.5%~0.15% 공제율 차등
통합투자세액공제	§ 24	규모 · 투자대상 자산별 1%~25% 기본공제 및 3~4% 추가공제
통합고용세액공제	§ 29의8	규모 · 소재지 · 상시근로자별 400만원~1,550만원 공제액 차등
고용증대 세액공제	§ 29의7	규모 · 소재지 · 상시근로자별 400만원~1,200만원 공제액 차등
사회보험료세액공제	§ 30의4	상시근로자별 50%~100% 공제율 차등(일부업종 공제율우대)
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	§ 63의2	최대 10년간 100%, 50% 감면율 적용 (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) *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
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	§ 63	최대 10년간 100%, 50% 감면율 적용 (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) *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

02)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·감면 제도

공제·감면제도(요건)

규 정	조특법	요 건			사후관리	농특세	최저한세
		규모	소재지	업종			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	§ 6	○	○	○	○	비과세	적용 (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)
위기지역창업 감면	§ 99의9	x	○	○	○	비과세	100%감면분 제외 50%감면분 적용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	§ 7	○	○	○	x	비과세	적용대상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§ 7의4	○	x	○	x	과세	적용대상
통합투자 세액공제	§ 24	x	○	○	○	과세	적용대상
통합고용 세액공제	§ 29의8	x	x	○	○	과세	적용대상
고용증대 세액공제	§ 29의7	x	x	○	○	과세	적용대상
사회보험료 세액공제	§ 30의4	○	x	x	○	비과세	적용대상
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	§ 63의2	x	○	○	○	비과세	적용제외 (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)
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	§ 63	x	○	○	○	비과세	적용제외 (성장관리,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)

03)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

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

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**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 - 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 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
- (감면액)**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감면율

구분	제조업 등		도·소매, 의료업		통관대리 등	
	수도권 내	수도권 외	수도권 내	수도권 외	수도권 내	수도권 외
중기업	-	15%	-	5%	-	7.5%
소기업	20%	30%	10%	10%	10%	15%

* (감면한도) 1억원 -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× 5백만원 (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은 감면한도 없음)

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04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

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

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
 - ① 창업중소기업(청년 · 소규모 창업기업 포함),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
 -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,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
- (감면액) ① (기본감면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감면율
 ② (추가감면) 산출세액 ×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× 50% (청년, 소규모 제외)

구분	일반창업		청년 · 소규모 창업	벤처 · 에너지신기술기업		창업보육센터 사업자
	기본	신성장		기본	신성장	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	-	-	50%(5년)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50%(5년)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100%(5년)	50%(5년)	75%(3년)+50%(2년)	50%(5년)

사후관리

-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▶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(이전 과세연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)

05)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*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*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,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하는 제도

적용대상·공제액

- (대상)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
-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
- (공제액)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(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) × 다음의 공제율

세금계산서 등*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	15일 이내	16일 ~ 30일	31일 ~ 60일
공제율	0.5%	0.3%	0.15%

* 「부가가치세법」,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세금계산서, 계산서 및 영수증

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IV

연구·인력개발 지원

- 01)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
- 02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
- 03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

01)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연구 · 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
- (공제액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비용 × 공제율

구분		중소기업		중견기업		대기업
		일반중소	유예기업	일반중견	코스닥중견	
일반 (선택)	당기분	25%	~3년차 15%, ~5년차 10%	8%		~2%
	증가분	50%		40%		25%
신성장 · 원천기술		30%~40%		20%~30%	25%~40%	20%~30%
국가전략기술('21.7월 지출분부터)		40%~50%		30%~40%		30%~40%

사후관리

- 기업부설(창작)연구소, 연구개발(창작)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
 ➔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또는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세액공제 배제

02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**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
 -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
 -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것
- (공제액)** 지급한 경영성과급 × 다음의 공제율

구분	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
공제율	15%

–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% 감면

* 제외 :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, 최대주주·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

사후관리

-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

03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**(대상)**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**내국법인**
 - ① 출자대상 :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, 창업 ·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
 - ② 출자방법 : 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
- **(공제액)** 출자지분 취득금액 × 5%

구분	내국법인(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)
공제율	5%

* 제외 :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
사후관리

-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
 - ▶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(日 0.025%, 2022.2.15. 이후 0.022%)을 가산하여 납부

V

기타지원

- 01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- 02)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
- 03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- 04)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
- 05)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

01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제도개요

-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

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
 - ① 부동산업(임대, 중개, 매매), 건설업, 소비성서비스업,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
 -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(중소기업 2년)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전부이전
 -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을

구분	이전 후 소재지	100% 감면	50% 감면
중소기업	① 수도권 일반지역 (자연보전권역, 성장관리권역, 단, 본사가 과밀억제권역내있는 경우본사도 이전)	초반 5년	이후 2년
중소기업 및 그 외 기업	②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 내 산업단지(중소기업은 광역시), 인구 30만 이상 도시	초반 5년	이후 2년
	③ 지방광역시,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성장촉진지역 등	초반 7년	이후 3년
	④ ①,②,③ 외의 지역	초반 7년	이후 3년
	⑤ ①,②,③ 외의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 등	초반 10년	이후 2년

사후관리

- 이전 후 ①3년 이내 폐업 · 해산시, ②사업 미개시, ③수도권에 동일한 공장을 설치 ➡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추가납부

02)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

제도개요

-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

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사회적 기업	장애인 표준사업장
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	100%	100%
그 다음 2년간	50%	50%
감면 한도	1억원 + 취약계층* 상시근로자수 × 2천만원	1억원 +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× 2천만원

*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

사후관리

-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,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
 - ▶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(日 0.025%, 2022.15. 이후 0.022%)을 가산하여 납부

03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
 - * 임차인 요건(모두 충족) : 소상공인, 임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, 임대인과 비특수관계자
- (공제액)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* × 공제율
 - *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

구분	법인
공제율	70%(50%*)

* 기준소득금액(종합소득금액+임대료 인하액)이 1억원 초과시 50% 적용

사후관리

-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 ·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
 - ▶ ①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②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

04)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

제도개요

- 위기지역*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
*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또는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

적용대상 · 감면액

- (대상) 감면대상업종*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법인 사업자
*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(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)
- (감면액) 산출세액 × (감면대상 소득 ÷ 과세표준) × 다음의 감면율

구분	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	그 다음 2년간
감면율	100%	50%

* 감면한도(중소기업 외 적용) : (가) + (나)

(가)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액 × 50%

(나)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백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원)

사후관리

-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(중소기업은 사후관리 제외)
 - ▶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원(청년 등 2천만원)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
-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 · 해산, 지역 이전하는 경우
 - ▶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

05)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

제도개요

-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적용대상 · 공제액

- (대상) 용역제공자¹⁾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²⁾ 내 국세정보통신망(홈택스 · 손택스)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
 - 1)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캐디, 간병인, 대리운전, 킥서비스, 가사도우미, 물품운반원, 중고자동차판매원, 욕실종사원,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9개 업종
 - 2)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- (공제액) 용역제공자 인원 수 × 300원 (한도 200만원, 최소 1만원)
- (적용기한) ' 26.12.31.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

참고자료

1. 상시근로자 개념 및 제외대상 등
2. 최저한세 개념 및 계산방식 등
3. 농어촌특별세 개념 및 계산방법 등
4. 세액공제 ·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

01.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10항



상시근로자 개념

-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



상시근로자 제외대상

-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(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),
-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,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,
-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 및 친족관계(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 등),
-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· 사회보험 등 미납자
- ⑦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*

* 급여액 기준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금 세액공제에만 적용됨



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

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÷ 과세연도 개월 수

※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

- 창업한 경우 : 0
- 합병 · 분할 · 사업양수 등인 경우 :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

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

최저한세 제도 개념

조세감면(공제, 감면, 비과세 등 포함)을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**최소한의 세금**



최저한세 계산방식(다음 중 큰 금액)

- 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은 후 세액
- ②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적용 받기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



최저한세 세율

중소기업			그 외		
일반 (유예기간 포함)	유예기간 이후		과표 100억원 이하	과표 1,000억원 이하	과표 1,000억원 초과
	1~3년	4~5년			
7%	8%	9%	10%	12%	17%

※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감면 배제 순서

- 신고 : 납세자 자진 선택
- 결정 : 손금산입 · 익금불산입 → 세액공제 → 세액감면 → 소득공제 · 비과세

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알아두면 유익한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

최저한세 적용대상 주요 세액공제 · 감면

-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(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)

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	조세감면제도	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	조세감면제도
1	세액 공제	§ 7의2	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	13	세액 공제	§ 30의3	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
2		§ 7의4	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14	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3		§ 10	R&D 세액공제(중소기업 제외)	15		§ 32④	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
4		§ 12②	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	16	세액 감면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100% 감면 외)
5		§ 12의4	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17		§ 7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
6		§ 13의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	18	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50% 감면)
7		§ 19①	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19		§ 31④⑤	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
8		§ 24	통합투자세액공제	20		§ 32④	창업중소기업등의법인전환에대한세액감면승계
9		§ 29의3	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	21		§ 63	공공의수도권인(인밀역제면역제외)전감면중소기업
10		§ 29의4	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22		§ 64	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
11		§ 29의7	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23		§ 96의2	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
12		§ 30의2	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	24		§ 99의9	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50% 감면)

02. 최저한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

알아두면 유익한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

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세액공제 · 감면

-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 (당기순이익 과세규정 적용 조합법인 제외)

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	조세감면제도	순번	감면 유형	조특법	조세감면제도
1	세액 공제	§ 10	R&D 세액공제(중소기업)	14	세액 감면	§ 85의6	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
2		§ 96의3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15		§ 99의9	위기지역내 창업기업 세액감면(100% 감면)
3		§ 100의18	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	16		§ 99의11	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
4		§ 104의32	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17		§ 104의24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
5		§ 126의6	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18		§ 121의2	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세액감면
6	세액 감면	§ 6①,⑥,⑦	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(100% 감면), 추가감면	19		§ 121의2	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세액감면
7	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100% 감면)	20		§ 121의4	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
8		§ 63	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	21		§ 121의8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(100% 감면)
9		§ 63	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22		§ 121의9	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100% 감면)
10		§ 63의2	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	23		§ 121의17	기업도시개발구역창업기업 감면(100% 감면)
11		§ 68	농업회사법인 감면(작물재배업소득)	24		§ 121의21	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100% 감면)
12		§ 85의6	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	25		§ 121의22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(100% 감면)

03.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



농어촌특별세 개념

농어업 경쟁력강화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목적으로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세목



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

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조세감면*으로 인한 감면세액에 20%

* 비과세소득, 세액감면·세액공제, 소득공제, 조합법인 등에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



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세액공제·감면 (농특세법 제4조 및 동령 제4조)

순번	조특법 조항	공제·감면 항목	순번	조특법 조항	공제·감면 항목
1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1	§ 63, 64	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2	§ 7	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	2	§ 66, 67	영농·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
3	§ 10	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	3	§ 68	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
4	§ 12의2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4	§ 99의9	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5	§ 30의3	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	5	§ 104의8	전자신고세액공제
6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6	§ 104의24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

04. 세액공제 · 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

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

알아두면 유익한
공제 · 감면 제도 안내



중복적용 배제 개념

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기 위해 한 과세기간에 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을 제한



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(선택하여 공제 가능 § 127조②)

-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



동일 과세연도에 주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상호 중복적용을 배제

순번	조특법 조항	세액감면 제도	순번	조특법 조항	세액공제 제도
1	§ 6	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1	§ 8의3	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
2	§ 7	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	2	§ 13의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
3	§ 63①	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3	§ 24	통합투자세액공제
4	§ 63의2①	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4	§ 25의6	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
5	§ 85의6	사회적기업 ·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	5	§ 30의4	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(§ 7와는 중복가능)
6	§ 99의9	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	6	§ 104의14	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
감사합니다

